**베트남 호치민 한인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최종)**

**2007. 10.17. 제정**

**2007. 12.05. 제1차 개정**

**2009. 08.25. 전면 개정**

**2010. 01.08. 개정**

**2012. 02.13. 전면 개정**

**2014. 03.28. 개정**

**2021. 03.17. 개정**

**2023. 02.15 개정**

**호치민 한인회장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호치민 한인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7조 (회장) 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호치민 한인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장 선출에 있어서 민주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정관에 달리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본 규정 제 2장에 따라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가 총괄 처리한다.

**제 4 조 (선거사무의 협조)**

본회의 지부 또는 지회는 선관위로부터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본회는 필요 시 제반 협력단체(공공협력기관 포함)에게 가능한 협조를 얻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5 조 (공 고)**

본회의 선거의 공고는 본 규정 제2장에 따라 설치되는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이 늦어도 선거일 50일 이전에 본회 회관에 이를 게시하고 이와 동시에 본회의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메일, 한인 대상 잡지, 한인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이하 선관위)**

**제 6 조 (설 치)**

1. 본회의 회장 선거를 위하여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70일 전까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장이 정관 제1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궐위가 된 때에는 본회의 회장 직무 대행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3. 한인회 이사회는 한인회 정회원 안에서 20명이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관위원)을 선임한다. 한인회 이사회는 선관위 구성 위원 2인을 지정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신한다.
4. 선관위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 7 조 (구 성)**

본 장에 따른 선관위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1. 선관위원은 한인회 “정회원”의 자격을 1년 이상 보유한 자로 한다.
2. 선관위원은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선관위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를 소집하고 본회의 회장 선거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4. 선관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의사에 따른다.
5. 선관위원이 본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6. 선관위는 선거와 개표 이후 본회의 회장 당선자가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선관위가 관리하던 모든 서류 및 잔여자금 일체를 차기 한인회에 인수인계하고 해산한다. 단,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판정을 마친 후에 해산한다.
7.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와 개표 이후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선관위는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판정을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며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8. 당선 무효일 경우 차점자를 신임회장으로 위촉할지의 여부를 총회에서 의결하며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전임회장이다. 단, 부결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8 조 (역 할)**

선관위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거공고

2. 입후보 등록 신청서의 수리 및 자격심사

3. 선거공보의 발행

4. 합동연설회 개최

5. 참관인 신청등록

6. 투·개표 관리

7. 선거홍보물의 등록

8. 당선인 확정발표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9 조 (재  정)**

선관위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회의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장 선 거**

**제 1 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0 조 (선거권)**

다음 각항의 자격이 되는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규정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2. 만 19세 이상인 자
3. 선거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중이며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자

**제 11 조 (피선거권)**

다음 각항의 자격이 되는 정회원은 본회의 회장에 대한 피선거권을 갖는다.

1.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본회의 정관 제 7조 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회원
2. 호치민 총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필한 자
3. 선거 공고일 기준 호치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자로서 적법한 비자를 소지한 자
4. 현 한인회의 회장 및 임원은 한인회장 입후보시 선거기간 동안 직무정지 한 뒤 출마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개표구·투표구)**

1. 투표구는 선거권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정하기로 한다.
2. 개표구는 1개표구 일괄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 절 선거인 명부**

**제 13 조 (명부작성)**

1. 선관위는 선거일 당일 투표장소에 참여한 선거권자의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유효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2.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여권번호 등 선거 사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4 조 (명부열람)**

1. 선거권자 또는 피선거권자는 합당한 사유와 함께 명부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승인 하에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선관위 해산 이후의 명부열람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하에 열람할 수 있다.

**제 3 절 입후보등록**

**제 15 조 (입후보등록)**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제16조에 규정한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 (별지 1호 양식)
2. 서약서 (별지 2호 양식)
3. 회장 입후보자의 이력서
4. 선거 공보 및 홍보물 시안 각 1부

**제 16조 (기탁금)**

1. 본 회의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시 미화 50,000불(혹은 해당 베트남동화)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기탁하여야 한다.
2. 기탁금은 선거공보 제작 및 선거홍보 현수막과 우편발송비 등 선거관리 비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잔여 기탁금은 본회의 차기 한인회 일반회계로 귀속시킨다.

**제 17 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회원에게 한인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절 선거운동**

**제 18 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19 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당해 선거에 따른 후보의 등록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0 조 (선거공보의 발행)**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 후보취지를 게재할 시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크기의 선거공보를 본회의 회관 및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정한 공공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한인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또는 한인소식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2. 후보자는 입후보등록마감 후 5일 이내 시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로부터 받은 홍보 시안을 5일 이내에 확정 통고하고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다.

**제 21 조 (선거 홍보물)**

1. 후보자는 입후보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득한 시안과 동일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배포할 수 있다.
2. 현수막은 각 후보가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정하는 수로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 (합동연설회)**

1. 합동연설회는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시행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2. 합동연설회의 발언 및 연설시간은 각 후보에게 균등하게 정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선거권자 누구나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는 공개된 매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를 경고 조치하며 재차 위반시 토론과 연설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23 조 (부정선거운동의 금지)**

다음 각 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1.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입후보 준비행위는 제외)
3. 후보자를 등록 또는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와 회원의 매수금지)
4.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심의를 득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6. 기타 후보자간 합의사항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 24 조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부정선거운동이 발견 또는 접수될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중지시켜야 하며,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계속할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조치 하거나 위반사항을 선거권자에게 홍보하거나 선관위 회의를 거쳐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5 절 선거일과 투표**

**제 25 조 (선거일)**

임기 만료로 인한 회장 선거의 경우 임기종료일 전 20일에서10일 사이의 기간 중 선관위가 정한 날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 궐위되어 보궐 선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관리할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결정한 날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공고한다. 단, 선거일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전쟁,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가 있을 시에는 선관위에서 선거일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선거방법)**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 27 조 (투표참관인)**

1. 후보자는 투표구에 2인의 투표참관인을 선정, 배치할 수 있다.
2. 투표개시 전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 기표소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제 28 조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오전 7시 선관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으로 시작하고, 당일 오후 7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관위원장은 투표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 29 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호는 입후보 등록종료 후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3. 투표용지에는 선관위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4. 투표용지에는 절단부분에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제 30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관위에서 제작하며 투표용지의 규격과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 31 조 (투표의 통지)**

선관위는 투표일, 투표시간, 투표장소를 선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32 조 (투표용지의 교부)**

1. 투표에 참가한 선거권자는 선관위원의 면전에서 여권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
2. 선관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자신의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신분이 미확인된 선거권자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다.

**제 33 조 (투표의 제한)**

1. 적법한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 또는 거주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투표할 권리가 없다.
2. 선거인은 1인당 한표만을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는다.
3. 1인 2회 등 중복 투표한 자의 투표는 전부 무효로 한다.

**제 34 조 (기표방법)**

1. 선거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3. 선거권자가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선관위에서 준비한 기구로 정해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35 조 (투표함의 봉쇄)**

1. 선관위는 투표 마감 후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투표함을 봉인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잔여투표용지를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절  개  표**

**제 36 조 (개표관리)**

1. 개표는 선관위의 주관 하에 미리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2.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3. 개표위원은 선거관리위원으로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를 방해 혹은 지연하는 일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장의 직권으로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인회 협력단체(공공협력기관 포함)단체장 4인 이상의 참관 하에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37 조 (투표함의 개함)**

1. 투표함의 개함은 선관위원장의 개표시작 선포 후 행한다.
2. 선관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 38 조 (개표개시)**

1. 선관위원회는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를 봉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개표 개시를 선언하고 개표 참관인의 참여 하에 개표를 개시하여야 한다.
2.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선관위원장이 득표수를 검열하여 발표한다.

**제 39 조 (무효투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정규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6. 정해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선관위가 정한 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기입한 것
7. 동일 선거인이 2회 이상 투표한 것
8. 기표란 선상에 기표된 것
9.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
10.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1. 정해진 표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정해진 표시 안에 메워져 있는 것
12. 동일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한 것은 무효로 하지 않으나, 날인 칸의 선에 인장이 닿았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
1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14. 투표지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하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것

**제 40 조 (투표지 구분 및 개표결과 공표)**

투표지는 개표가 끝난 후 유효·무효를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선거록에 기재한 후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한다.

**제 41 조 (당선자 결정)**

1. 선관위는 개표완료 즉시 유효투표자 중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3. 단일 후보 시 단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5.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 선관위에서 재 공고한다.

**제 42 조 (이의제기 및 처리)**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사항을 판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 칙**

**제 43 조 (적 용)**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4 조 (준 용)**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 및 선거법을 준용한다.

[별표1]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 시**

|  |  |  |
| --- | --- | --- |
| 일정 | 내용 | 비고 |
| 임기 종료 70일 전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0명이내 (규정 제 6조 및 7조) |
| 선거일 50일 전 | 선거공고 | 규정 제5조  |
| 선거 공고일 다음 날부터 20일간  | 입후보 등록 기간  | 규정 제15조  |
| 임기 종료일 20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 | 선거일  | 규정 제25조  |

**□보궐 선거 시**

|  |  |  |
| --- | --- | --- |
| 일정 | 내용 | 비고 |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규정 제6조 |
| 선거일 20일 전 | 선거공고 |  |
| 선거 공고일 다음 날부터 10일간  | 입후보 등록 기간  |  |
| 선관위 구성일로부터 30일 이내  | 선거일  |  |

[별지제1호서식] (규칙제15조관련)

**후보자등록신청서**

1. 입후보명 :호치민한인회장

2. 성명 :

(한자:,영문: )

3.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4. 주소(베트남) :

5. 직 업 :

6. 베트남거주기간 :

7. 경력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 가능)

가.

나.

다.

8. 출마소견

호치민 한인회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로 등록을 붙임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후보자 ○ ○ ○ (날인, 싸인)

호치민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서류 :

1. 서약서 1부
2. 여권사본 (원본제시) 1부
3. 재외국민등록증사본 1부 (원본제시)
4. 비자증 사본 1부 (거주기간확인, 원본제시)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후보자홍보용사진 1매 (여권용사진)
7. 범죄사실증명서 1부 (선거 전일까지 제출 가능)

주)

1. 학력은 최종 출신학교명과 그 졸업 또는 수료연한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학력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2. 표기된 성명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베트남 거주 기간은 실제 베트남내에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별지 2호서식: 제15조관련)

서약서

성명:O OO

상기 본인은 호치민 한인회장에 입후보함에 있어서 후보등록에 따른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약 후보 등록후는 물론 당선되어 취임 후에라도 허위사실이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후보자격을 박탈, 당선 무효는 물론 후보 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과 당선 후 납부한 한인회발전기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기20 년 00 월 00일

**서약자 : O O O**

호치민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